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421 호 2023. 9. 27.(수)

##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2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203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204호[공유수면 점·사용 협의사항 고시].....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206호[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사항 고시]..... 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207호[도시계획시설[(도로) 중2-577호선 외 2개 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6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284호[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4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li> </ul>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3년 9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2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을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재하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지급 구분 변경에 따른 정비(안 제6조제9호)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203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5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3. 9. 25.
2. 점용·사용의 목적 : 식물의 식재[울산숲(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762-11번지 외 9필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 3,862㎡  
나. 기 간 : 2023. 9. 25. ~ 영구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공원녹지과)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204호

##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완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 고시내역

협의 번호	협의자		점용장소	면적 (㎡)	협의기간	점용목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제2023 -9호	울산복구청 환경위생과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복구 산하동 956-2번지 일원	53.16	'23. 09. 25. ~ '38. 09. 24.	공중화장실
제2023 -10호	울산복구청 환경위생과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복구 산하동 367-12번지 일원	62,94	'23. 09. 25. ~ '38. 09. 24.	공중화장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206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 계획 승인(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 승인(신고) 고시내역

신고승인 년월일	승인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공사내용
		성명	주소					
2023.9.25.	제2023-5호	동남해안 해상풍력 (주)	울산광역시 복구 강동산하4로 21, 502호(산하동)	울산광역시 복구 정자동 정자항 북동 해상	4,493.24	2023. 10.10.	2023. 12.10.	해상 시추조사(동남 해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예비 지반조사)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 207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2-577호선 외 2개 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94호(2023. 9. 21.)로 고시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2-577호선 외 2개 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에 대하여 기재사항 중 정정내용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7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2-577호선 외 2개 도로]사업

###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203-3번지 일원 (변경없음)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5,811.0m<sup>2</sup> (변경없음)

○ 도로

등급	등 급			연 장(m)	비 고
	류별	번호	폭원(m)		
중로	2	577	15~20	260	A=4,480.9m <sup>2</sup>
중로	3	474	11	76	A=952.3m <sup>2</sup>
소로	2	669	8	43	A=377.8m <sup>2</sup>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성명 : (주)무궁화신탁 대표이사 권준명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P&S타워)

### 5. 사업기간 : 인가일 ~ 2025. 6. 30. (변경없음)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변경)**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물건조서 : 첨부파일 붙임 **(변경)**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사업 준공 후 해당시설 관리청에 무상귀속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052-241-79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1)

구분	소재지 북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신천동	203-3	전	1302.0	1302.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2	신천동	203-40	창	255.3	255.3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3	신천동	203-8	도	99.0	61.0	울산광역시 북구					
4	신천동	203-9	도	37.3	37.3	울산광역시 북구					
5	신천동	203-10	도	54.0	54.0	울산광역시 북구					
6	신천동	203-11	도	30.1	30.1	울산광역시 북구					
7	신천동	203-12	도	23.3	23.3	울산광역시 북구					
8	신천동	203-13	도	17.3	17.3	울산광역시 북구					
9	신천동	203-14	도	86.3	86.3	울산광역시 북구					
10	신천동	203-41	대	132.7	132.7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11	신천동	203-30	대	261.9	261.9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12	신천동	203-31	전	31.2	31.2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13	신천동	203-32	전	54.0	54.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14	신천동	203-33	대	49.4	49.4	울산광역시 북구					
15	신천동	203-42	전	180.0	180.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16	신천동	203-35	도	39.0	39.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17	신천동	203-36	전	4.7	4.7	울산광역시 북구					
18	신천동	203-37	전	31.3	31.3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19	신천동	227-1	전	33.3	33.3	김○권	울산광역시 중구 북산동 100-3 새운파레스 타운 3동 ○○○호	1/2			
						이○호	울산광역시 중구 북산동 186-3 새운파레스 타운 ○동 ○○○호	1/2			
20	신천동	229-12	전	3.7	3.7	고○림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245, 유곡동 예일린의 풀 3차 ○○○동 1000호				
21	신천동	229-13	전	106.7	106.7	고○용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산에들레안길 ○○	○○○협동조합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중앙길 ○○-2	근저당권	
22	신천동	229-14	전	105.8	105.8	고○용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산에들레안길 ○○	○○○협동조합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중앙길 ○○-2	근저당권	
23	신천동	229-7	전	245.2	240.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24	신천동	229-16	전	180.8	180.8	고○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 드림인시티에일린의풀 2차 ○○○동 1000호	○○○○신용 협동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	근저당권	(당초)
24	신천동	229-15	전	180.8	180.8	고○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 드림인시티에일린의풀 2차 ○○○동 1000호	○○○○신용 협동조합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	근저당권	(변경)
25	신천동	477-18	대	109.9	109.9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26	신천동	477-19	전	5.1	5.1	국 (기획재정부)					
27	신천동	477-20	전	206.2	206.2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수용·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2)

구분	소재지 지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28	신천동	477-22	전	49.5	49.5	권○자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5				
29	신천동	477-6	도	39.8	39.8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30	신천동	477-7	도	114.1	114.1	울산광역시 북구					
31	신천동	477-9	전	280.7	188.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32	신천동	477-10	대	307.2	240.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33	신천동	477-11	대	35.9	35.9	관선○○계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0	이○열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56, 도곡동 타월팰리스아파트 비동 ○○○호		
34	신천동	477-21	대	41.7	41.7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35	신천동	477-14	도	100.7	100.7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36	신천동	478-1	전	60.0	60.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37	신천동	478-5	대	231.0	231.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38	신천동	478-16	도	59.0	59.0	울산광역시 북구					
39	신천동	478-17	전	2.0	2.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40	신천동	478-18	도	10.0	10.0	울산광역시 북구					
41	신천동	478-19	대	35.0	20.0	울산광역시					
42	신천동	478-20	대	43.0	43.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43	신천동	478-11	대	1.0	1.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44	신천동	478-21	도	146.0	69.0	울산광역시					
45	신천동	481-5	도	201.0	163.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46	신천동	481-17	도	103.0	11.0	울산광역시 북구					
47	신천동	759-32	도	1,760.9	607.5	국 (국토교통부)					
48	신천동	759-33	도	122.9	16.5	국 (국토교통부)					
49	신천동	759-26	도	63.0	63.0	국 (국토교통부)					
50	신천동	759-27	도	230.0	3.0	국 (국토교통부)					
합 계		7,772.9	5,811.0								

# 물 건 조 서

사 업 명 : 울산북구 신천동 476-4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사 업 시 행 자 : (주)우궁화신택 대표 권준명

일련 번호	소재지 (울산시) (북 구)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변경 여부
		당초	편입					성 명	등기부등본주소	송달주소		
7	신천동	229-3	229-13 229-14	건물1	블록조/시멘트기와	49.32	㎡	고대용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산에들레안길 11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산에들레안길 11	본건물 미등기 실측 45.8	
8	신천동	229-3	229-13 229-14	건물2	블록조/스레트	36	㎡	고대용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산에들레안길 11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산에들레안길 11	부속건물 미등기	
9	신천동	229-3	229-13 229-14	담장1	조적조 2.5*1.5	3.75	㎡	고대용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산에들레안길 11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산에들레안길 11		
10	신천동	229-3	229-13 229-14	담장2	조적조 1.7*1.2	2.04	㎡	고대용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산에들레안길 11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산에들레안길 11		
11	신천동	229-3	229-13 229-14	가추1(참고)	조적조/슬래브	9	㎡	고대용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산에들레안길 11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산에들레안길 11	본건물좌측	
12	신천동	229-3	229-13 229-14	가추2(보일러실)	조적조/슬래브	2.25	㎡	고대용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산에들레안길 11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산에들레안길 11	본건물우측	
13	신천동	229-3	229-13 229-14	계단	콘크리트 0.6*3.4	2.04	㎡	고대용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산에들레안길 11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산에들레안길 11	본건물좌측	
14	신천동	229-3	229-13 229-14	차양1	스레트 1.2*1.0	1	식	고대용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산에들레안길 11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산에들레안길 11	본건물좌측	
15	신천동	229-3	229-13 229-14	차양2	스레트 5.0*1.0	1	식	고대용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산에들레안길 11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산에들레안길 11	본건물정면	
16	신천동	229-3	229-13 229-14	계단참1	-	17.3	㎡	고대용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산에들레안길 11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산에들레안길 11	본건물	
17	신천동	229-3	229-13 229-14	계단참2	-	7	㎡	고대용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산에들레안길 11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산에들레안길 11	부속건물	
18	신천동	229-8	229-16	건물(주택)	블록조/슬래브	79.34	㎡	고문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 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울산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당초)	
19	신천동	229-8	229-15	건물(주택)	블록조/슬래브	79.34	㎡	고문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 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울산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변경)	
20	신천동	229-8	229-16	문주	블록조/슬래브	1	식	고문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 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울산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당초)	
21	신천동	229-8	229-15	문주	블록조/슬래브	1	식	고문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 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울산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변경)	
22	신천동	229-8	229-16	대문	철재 H:1.7, L:1.5	2	짝	고문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 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울산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당초)	
23	신천동	229-8	229-15	대문	철재 H:1.7, L:1.5	2	짝	고문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 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울산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변경)	
24	신천동	229-8	229-16	바닥포장	콘크리트	23.1	㎡	고문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 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울산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당초)	



25	신천동	229-8	229-15	바닥포장	콘크리트	23.1	㎡	고문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 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울산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변경)
26	신천동	229-8	229-16	가추1(창고)	블록조/슬래브	17.5	㎡	고문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 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울산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당초)
27	신천동	229-8	229-15	가추1(창고)	블록조/슬래브	17.5	㎡	고문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 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울산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화장실포함	(변경)
28	신천동	229-8	229-16	계단1	콘크리트 0.7*3.0	2.1	㎡	고문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 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울산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당초)
29	신천동	229-8	229-15	계단1	콘크리트 0.7*3.0	2.1	㎡	고문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 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울산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창고옥상	(변경)
30	신천동	229-8	229-16	계단2	콘크리트 1.0*2.3	2.3	㎡	고문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 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울산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당초)
31	신천동	229-8	229-15	계단2	콘크리트 1.0*2.3	2.3	㎡	고문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 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울산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옥상면적	(변경)
32	신천동	229-8	229-16	화단	조적 0.3*2	0.6	㎡	고문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 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울산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당초)
33	신천동	229-8	229-15	화단	조적 0.3*2	0.6	㎡	고문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 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울산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변경)
34	신천동	229-8	229-16	기단	3.0*1.0	3	㎡	고문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 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울산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당초)
35	신천동	229-8	229-15	기단	3.0*1.0	3	㎡	고문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 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울산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변경)
36	신천동	229-8	229-16	가추2(보일러실1)	조적조/스레트 0.8*3.0	2.4	㎡	고문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 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울산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당초)
37	신천동	229-8	229-15	가추2(보일러실1)	조적조/스레트 0.8*3.0	2.4	㎡	고문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 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울산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본건물면	(변경)
38	신천동	229-8	229-16	가추3(보일러실2)	조적조/스레트 2.3*1.9	4.37	㎡	고문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 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울산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당초)
39	신천동	229-8	229-15	가추3(보일러실2)	조적조/스레트 2.3*1.9	4.37	㎡	고문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 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울산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본건물뒤	(변경)
40	신천동	229-8	229-16	담장1	조적 H:1.7 W:17.0	28.9	㎡	고문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 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울산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당초)
41	신천동	229-8	229-15	담장1	조적 H:1.7 W:17.0	28.9	㎡	고문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 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울산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변경)
42	신천동	229-8	229-16	담장2	조적 H:1.7 W:3.5	5.95	㎡	고문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 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울산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1203호 (매곡동, 드림인시티에일린의울2차)		(당초)





63	신천동	229-8	229-15	엄나무2	R:0.25, H:6.0	1 주	고문주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 1203호 (매곡동, 드림인스티에일린의울2차)	울산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204동1203호 (매곡동, 드림인스티에일린의울2차)	건물위	(변경)
64	신천동	477-5	477-22	가추(화장실)	조적조/스레트	2.6 ㎡	권능자	울산시 북구 신천동 477-5	울산시 북구 신천동 477-5		
65	신천동	477-5	477-22	가추(창고)	조적조/스레트	15 ㎡	권능자	울산시 북구 신천동 477-5	울산시 북구 신천동 477-5		
66	신천동	477-5	477-22	담장1	조적 H:2.0 W:4.0	8 ㎡	권능자	울산시 북구 신천동 477-5	울산시 북구 신천동 477-5		
67	신천동	477-5	477-22	담장2	조적 H:1.5 W:7.0	10.5 ㎡	권능자	울산시 북구 신천동 477-5	울산시 북구 신천동 477-5		
68	신천동	477-5	477-22	바닥포장	잡석 7.0*2.0	14 ㎡	권능자	울산시 북구 신천동 477-5	울산시 북구 신천동 477-5		
69	신천동	477-5	477-22	골담초	R:0.05, H:2.5	1 주	권능자	울산시 북구 신천동 477-5	울산시 북구 신천동 477-5		
70	신천동	477-5	477-22	매조꽃	R:0.03, H:1.5	1 주	권능자	울산시 북구 신천동 477-5	울산시 북구 신천동 477-5		
71	신천동	477-5	477-22	사철나무	R:0.05, H:3.0	1 주	권능자	울산시 북구 신천동 477-5	울산시 북구 신천동 477-5		
72	신천동	477-5	477-22	엄나무1	R:0.3, H:4.0	1 주	권능자	울산시 북구 신천동 477-5	울산시 북구 신천동 477-5		
73	신천동	477-5	477-22	엄나무2	R:0.2, H:3.0	1 주	권능자	울산시 북구 신천동 477-5	울산시 북구 신천동 477-5		
74	신천동	477-5	477-22	두릅나무1	R:0.08, H:1.5	10 주	권능자	울산시 북구 신천동 477-5	울산시 북구 신천동 477-5		
75	신천동	477-5	477-22	두릅나무2	R:0.03, H:1.0	14 주	권능자	울산시 북구 신천동 477-5	울산시 북구 신천동 477-5		
76	신천동	477-5	477-22	오가피나무	R:0.05, H:1.5	4 주	권능자	울산시 북구 신천동 477-5	울산시 북구 신천동 477-5		
77	신천동	477-11	477-11	건물	조적조/슬래브	57.48 ㎡	관성준양계	울산시 남구 신정동 1135-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56, 비동 5903호 (도곡동, 타워팰리스아파트) 대표자 : 이창열	일부편입	
78	신천동	477-11	477-11	담장	조적 H:2.0 W:10.2	20.4 ㎡	관성준양계	울산시 남구 신정동 1135-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56, 비동 5903호 (도곡동, 타워팰리스아파트) 대표자 : 이창열		
79	신천동	477-11	477-11	가추	블럭조/판발 (7.6*1.1)+(3.6*1.1)	12.32 ㎡	관성준양계	울산시 남구 신정동 1135-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56, 비동 5903호 (도곡동, 타워팰리스아파트) 대표자 : 이창열		
80	신천동	477-11	477-11	차양	벽산 2.8*1.0	2.8 ㎡	관성준양계	울산시 남구 신정동 1135-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56, 비동 5903호 (도곡동, 타워팰리스아파트) 대표자 : 이창열		
81	합 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1284호

#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제정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인구정책방향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 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위원회 구성 등(안 제5조~제12조)
- 라. 인구정책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지원(안 제13조, 제14조)

### 3.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제7조의2

### 4. 조 례 안 :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17.(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52-241-7151, 팩스번호 : 052-241-7109
- 전자우편(E-mail) : kyusickim@korea.kr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복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인구정책의 중·장기적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중 2명 이내
2. 인구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인구정책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한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인식개선과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인구정책 사업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인구정책 관련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